

대통령령 제 호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검찰청·국민안전처·경찰청·국세청·관세청·중앙선거관리위원회·금융위원회”를 “검찰청·국민안전처·경찰청·국세청·관세청·중앙선거관리위원회·금융위원회·국가정보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 정보: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검찰총장·국민안전처장관·경찰청장·국세청장·관세청장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가”를 “검찰총장·국민안전처장관·경찰청장·국세청장·관세청장·중앙선거관리위원회·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”로 한다.

별표 별표의 5란의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란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) ①·②(생략)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장(이하 “금융정보분석원장”이라 한다)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과 법 제7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·국민안전처·경찰청·국세청·관세청·중앙선거관리위원회· <u>금융위원회</u> 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④(생략)	제5조(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) 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금융위원회</u> · <u>국가정보원</u> ----- ----- -.
제11조의2(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)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”란 불법재산·자금 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.	제11조의2(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<신 설>

② (생략)

6.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는
정보: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
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
는 정보

② (현행과 같음)